

2024년도 「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무재해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화성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화성시 관내 소공인의 친환경 작업장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“무재해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”을 시행합니다.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4. 7.
(재)화성산업진흥원장

◆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4. 6.~12.
- 사업대상: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업종 영위 중인 도시형 소공인
- 추진일정

<table><tr><th>기업모집</th></tr><tr><td>진흥원</td></tr><tr><td>2024. 7.</td></tr></table>	기업모집	진흥원	2024. 7.	▶	<table><tr><th>평가·선정</th></tr><tr><td>진흥원</td></tr><tr><td>2024. 8.</td></tr></table>	평가·선정	진흥원	2024. 8.	▶	<table><tr><th>현장실사</th></tr><tr><td>진흥원</td></tr><tr><td>2024. 8.</td></tr></table>	현장실사	진흥원	2024. 8.	▶	<table><tr><th>협약체결·지원금 지급</th></tr><tr><td>진흥원-소공인</td></tr><tr><td>2024. 9.</td></tr></table>	협약체결·지원금 지급	진흥원-소공인	2024. 9.
기업모집																		
진흥원																		
2024. 7.																		
평가·선정																		
진흥원																		
2024. 8.																		
현장실사																		
진흥원																		
2024. 8.																		
협약체결·지원금 지급																		
진흥원-소공인																		
2024. 9.																		
▶	<table><tr><th>사업 수행</th></tr><tr><td>소공인</td></tr><tr><td>2024. 9.~10.</td></tr></table>	사업 수행	소공인	2024. 9.~10.	▶	<table><tr><th>지원금 정산</th></tr><tr><td>소공인·진흥원</td></tr><tr><td>2024. 11.</td></tr></table>	지원금 정산	소공인·진흥원	2024. 11.	▶	<table><tr><th>결과보고</th></tr><tr><td>진흥원</td></tr><tr><td>2024. 12.</td></tr></table>	결과보고	진흥원	2024. 12.				
사업 수행																		
소공인																		
2024. 9.~10.																		
지원금 정산																		
소공인·진흥원																		
2024. 11.																		
결과보고																		
진흥원																		
2024. 12.																		

*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□ 지원내용

- (지원사항)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보수, 장비 교체 등 비용 최대 500만원/1社(공급가액 기준) 지원
- (지급방식) 100% 선지급(지원금 사용계획서,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)
- (지원비목) 진흥원 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 비목 중 장비구입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, 사업 특성에 따라 비목별 세부 지원 사항 구체화

<지원 비목>

비목	세부내용
장비구입비	- 재해 예방 및 안전 작업장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 교체구매 비용 ※ 진흥원 통합 지침상 장비구입 및 암차료 비목 중 '장비구입비' 지원 본 사업에서 암차료는 지원되지 않음 ※ 본 사업과 무관한 장비 교체구매는 불가함 ※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만 지원 ※ 공급가액 기준 단가 50만원 이상의 자산성 물품 자산적 성격을 가지는 물품(SW 구매 등), 일반 사무 및 경영 관련 물품(컴퓨터 통신기기 사무 가구 및 집기 등)은 구매 불가함
위탁사업비	- 사업목적과 관련이 있는 공사 및 개보수 작업 중 외부 전문업체 위탁이 필요한 비용 ※ 전가조명 공사, 유해물질 제거 작업, 설비 도색 등 ※ 공사 또는 개보수 작업 위탁업체의 경우 아래 공급업체 선정기준**을 충족하여야 하며, 선정기준 증빙위한 공급업체 자료(등록증 등) 제출 필요
회계정산 및 제세공과금	- (의무계상)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사업비 회계감사에 대한 수행비용 ☞ 11만원(공급가액 기준)

* 지원금 신청 시 타 비목은 사용 불가, 통합지침 및 세부지침은 선정 후 배포 예정

** 공사 또는 개보수 작업 공급업체 선정기준

구 분	세부기준
공통	○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 ○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○ 상시근로자 1인 이상(사업주 포함 2명) 업체 ○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), 비속(자제),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
공사·개보수	○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(전문)건설업 등록증 -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

◆ 모집공고 개요

□ 모집정원: 20개사 이내

* 과락자 발생 등으로 인한 모집 정원 미달 시 추가모집 실시할 수 있음.

□ 신청기간: 2024. 7. 4.(목) 9시~2024. 7. 11.(목) 14시까지

□ 신청방법: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
○ 지원사업공고 → 화성시 지원사업 → ‘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무재해 환경 구축 지원사업’ 클릭 후 참여신청

* 방문·이메일 제출 불가(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),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

□ 지원자격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화성시 소재 개인 또는 법인 기업

* 기본요건 '가', '나' 두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구분	자격 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건	가.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*인 기업 * 도시형 소공인: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,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'제조업'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나.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(화성시 전역) 주요 업종^[참조]을 영위중인 기업 [참조]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주요업종(중분류 기준 10가지) - 아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이며, 해당 중분류 업종의 대분류는 모두 "C (제조업)"임. * '업종코드-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' 노랑셀 참조 <table><tr><th>대분류</th><th>중분류</th><th>중분류명</th><th>대분류</th><th>중분류</th><th>중분류명</th></tr><tr><td>C</td><td>20</td><td>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</td><td>C</td><td>27</td><td>의료, 정밀,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</td></tr><tr><td>C</td><td>21</td><td>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</td><td>C</td><td>28</td><td>전기장비 제조업</td></tr><tr><td>C</td><td>22</td><td>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</td><td>C</td><td>29</td><td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</tr><tr><td>C</td><td>25</td><td>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</td><td>C</td><td>30</td><td>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</td></tr><tr><td>C</td><td>26</td><td>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</td><td>C</td><td>31</td><td>기타 운송장비 제조업</td></tr></table>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C	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C	27	의료, 정밀,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C	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	C	28	전기장비 제조업	C	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	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	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	C	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	26	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	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	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C	27	의료, 정밀,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	C	28	전기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	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	C	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6	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	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화성시 소재 기준	화성시 내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*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화성시 관내기업으로 인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요 약	① 소공인 ② 집적지구 주요 업종코드 영위 ③ 화성시 관내 기업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근로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지원 제외대상

○ 부적격 대상*이거나 중복수혜**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제외

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지원 제외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.

* 부적격 대상

- 1) 공고 마감일 기준 소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(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불가한 자)
- 2) 공고 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(사업자 미등록자)인 경우
- 3) 공고 마감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(지점은 관내 기업으로 인정불가)인 경우
- 4) 신청서,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
- 5)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6)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
- 7) 휴·폐업 혹은 파산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8)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

** 중복수혜 대상

- 1) 화성시 소공인 지원시설(향남 소공인특화지원센터, 팔탄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,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, 봉담 소공인복합지원센터)에서 전년도~당해년도 기간동안 동일(유사)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
- 2) 그 외 선정 이후에도 중복수혜로 판단 시 제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.

◆ 선정 및 평가

□ 선정절차

○ 신청 서류 기반으로 서면 평가 후 우선 협약대상자 선정 및 현장실사

<선정 절차>

단계	①	②		③	④	⑤	
추진 절차	신청 및 접수	적격확인	서면 평가		우선 협약대상 선정	현장실사	최종 선정
추진 내용	진흥원 홈페이지	소공인 여부, 업종코드 등 확인	정량 (70점)	정성 (30점)	20개사 선정	신청사항 진위여부 현장실사	-
추진 주체	참여기업	진흥원	진흥원	외부 위원회	진흥원	진흥원	진흥원

* 제출된 서류 기반으로 서면 평가만 진행되며 별도 발표평가는 실시하지 않음.

** 우선 협약대상 기업으로 선정 시 최종 현장실사 실시하며, **부적격 사항 발견 시 협약 불가** 및 차순위 협약대상자로 협약 우선권 넘어감.

□ 서면평가 개요

○ (서면평가 일정) 서류 접수 마감 이후 3주 내외 소요

○ (서면평가 방식) 정량 및 정성

- 정량평가(70): 제출된 서류 기반으로 정량 점수 책정

* 평가기준: 매출, 매출증가율, 업력, 기술력, 역량강화 활동(교육 수료 등), 지원 수혜도

- 정성평가(30): 사업계획서 기반 외부 평가위원회 3인 평가(3인 평균점수)

* 평가기준: 사업필요성, 사업계획, 기대효과

○ (우선 협약대상자 선정기준) 서면평가 점수 고득점 순

- 동점일 경우 상위배점 항목(정량>정성)의 고득점순

○ (우선 협약대상자 선정공고) 홈페이지 '알림마당-공고·공지' 게시판 공고

□ 접수 시 제출서류 목록

★ 선택제출 서류는 누락 시 접수 마감 후 보완제출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적색 '●' 표시 필수제출 서류, 검은색 '▲' 표시 선택(해당시)제출 서류

구분	제출항목	비고	발급처	
서식 작성	● (서식 제1호) 사업신청서(사업계획서)	한글 또는 PDF 형식, 서식은 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	공고문 내 서식 다운로드	
	● (서식 제2호) 자가점검표			
	● (서식 제3호) 서약서	확인서 작성 방식은 유의사항 '[참조] 3번' 참고		
	● (서식 제4호) 주업종 코드 확인서			
발급 서류	●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)	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	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	
	● 국세 완납 증명서	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		
	● 지방세 완납 증명서	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		
	●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	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s://sminfo.mss.go.kr)	
	▲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	법인기업인 경우 필수제출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(https://www.rnd.or.kr/)	
	▲ 공장등록증	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 필수		
	▲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정서	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 필수, 연구소 보유업체는 가점 부여		
	▲ (택 1) 매출 확인 서류	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	손익계산서 포함 제출 필수	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		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	-	세무서, 홈택스, 정부24
		최근 2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및 사업장현황신고서	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	세무서, 홈택스
	▲ 산업재산권, 국내외 인증 확인서류	특허, ISO 등 인증 관련 서류	각 서류 발급기관	
	▲ 최근 2년 내 교육 수료증	임직원 안전, 기술 등 관련 교육 수료증	해당 교육기관	
	▲ 4대보험 가입자명부	재직자(대표제외) 교육 증빙 시 필수 제출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	
	▲ 백년 소공인 확인서	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, 백년 소공인 기업은 가점부여	중소벤처기업부	

*** [필독]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**

- 1) 발급서류는 유효기간 또는 발급일 기준 확인 필수, 별도 명시 없을 시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제출
- 2) 소상공인확인서는 '**소기업-소상공인**' 문구가 있어야 인정

*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s://sminfo.mss.go.kr/>)'에서 발급가능, 5일~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
(☎ 문의처 :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1811-6508)

** '**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**' 인정불가

- 3) [(서식 제4호)주업종 코드 확인서] 작성 시, **아래 방법대로 코드 확인하여 작성**

* 불임의 업종코드-표준산업분류코드 연계표는 통계청에서 배포하는 자료로, 단순 참조를 위한 자료임.

<주업종 코드 확인 방법>

- 1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**주업종명(업종코드)조회**
 - 순서: 로그인(필수) ▶ MY홈택스 ▶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▶ 주업종명(업종코드) 조회
 - 홈택스 문의처: 국번없이 126
- 2) 조회 후 **두 가지 모두 수행**
 - 2-1) 불임의 "산업분류코드 자동변환기" 에서 국세청 조회 업종코드(6자리) 입력 후,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변환 ▶ [(서식 제4호) 주업종 코드 확인서] 에 주업종 코드 작성
 - 2-2) [(서식 제4호) 주업종 코드 확인서]에 홈택스 조회 화면 캡처본 첨부
- 3) 확인서 하단에 인감 또는 자필서명 날인 후 제출

- 4) 매출 증빙서류는 3가지 중 제출이 가능한 1가지 택하여 제출하며, 2년 미만 기업은 조회가능한 기간까지 제출
- 5) 산업재산권, 국내외 인증 확인서류는 **인증서, 특허증 등 제출**(단, 산업재산 또는 인증서로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)
- 6) 최근 2년 내 교육 수료증은 **교육기관의 직인 찍힌 수료증만 인정** 가능하며, 신청화면 캡처 등 유사 인증자료는 인정 불가함. 재직자의 교육 수료여부 인정필요 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추가 제출 필수

◆ 향후일정 및 유의사항

□ 향후일정

- (현장실사) 우선 협약대상자 현장실사 실시(약 2주 이상 소요)

- 현장실사 일정은 선정 이후 별도 통보

- * 포기자 발생 또는 현장실사 탈락 시 차순위 협약대상자 추가 선발

- (협약체결) 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

- 협약기간은 약 2-3개월 예정

- 협약 전 **화성산업진흥원 성과관리 시스템 '질링스'** 가입 및 정보제공 동의 필수, 미동의시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불가

○ (지원금 지급) 지원금 교부신청 절차 추진 및 지원금 지급

- 사업비 통장으로 100% 선지급하며, 지급기일(협약시작일)보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자비사용 후 지원금액에서 공제가능

- 지정 회계법인* 통해 정산 추진 및 승인금액 확정, 불인정금 및 미사용액은 환수

* 회계법인 정산 위탁비용은 지원금 내 계상(공급가액 기준 11만원)하여 정산 처리

□ 유의사항

○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, 제3자(공급업체, 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 적발 시 진흥원 사업 참여에서 제재조치 및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.

- 또한,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진흥원에 신고 요망

○ 제출한 일체 서류 및 물품은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.

○ 참가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,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.

○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.

○ 선정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
○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, 결과물, 설문조사,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
◆ 문의처

□ (재)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

○ ☞ kjy@hsbiz.or.kr, ☎ 031-377-3943

*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요망

** 상기 공고내용 및 평가방식은 사업운영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(재)화성산업진흥원장